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안전관리 강화 협조 요청(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2897(2021.10.15.)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10.29.)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예방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 70%를 넘어섬에 따라 중증·사망 예방효과가 본격화되고 있어,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 규제에서 중증환자, 사망자 억제를 기본 방향으로 접종완료자 중심의 점진적 방역 완화·해제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 및 고령·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시설을 중심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는 한편, 그 외 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비롯하여 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제한 등 아래와 같이, 방역수칙을 완화하여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조치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적용시설	▲ 유흥시설 등 ▲ 노래(코인)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마경륜·경정장 ▲ 카지노(내국인) ※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유흥시설은 접종완료자만 이용가능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및 밀집도 제한 등	▲ (운영시간) 유흥시설 외 제한없음 ▲ (밀집도 제한) 시설에 따라 4㎡당 1명/한 칸 띄어 앉기/수용인원 50%/제한해제 등 적용 ▲ (음식섭취) 금지 유지, 단, 영화관(상영관), 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에 한해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시 예외적 가능	결혼식 등 일부시설 종전 수칙 적용가능
종교시설	▲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50% 가능 ※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 제한 미적용 ▲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여 사적모임 제한 내 가능(취식·큰소리로 기도 등 금지)	소모임 장소는 종교 시설 내로 한정
사적모임	▲ (수도권) 최대 10명 ▲ (수도권 외 지역) 최대 12명 ※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가능	-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 (1~99명) 접종 완료 여부 관계없이 개최 가능 ▲ (100~4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 참석하여 가능 ▲ (500명 이상) 원칙 금지, 단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각종 스포츠대회, (지역)축제에 한해 지자체·관할 부처 사전 승인 후 예외적 가능	-

가. 적용기간: 2021. 11. 1.(월) 0시 ~ 별도 안내 시 까지

나. 적용지역: 전국 17개 시도*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경과규정

- 계도기간 부여: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정 운영 여부에 한해 적용의무 시설 중 실내체육 시설은 2021.11.1. 0시부터 2주간, 나머지 시설은 1주간 계도기간 부여
- 운영시간 제한 유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32897(2021.10.15.)」에 따른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에 적용되던 운영시간 제한 내지 집합금지 조치는 2021.11.1. 0시부터 같은 날 05시까지 유지(계도기간 미적용)

※ 2021.10.31. 24시 현재 종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 중인 경상북도 12개 시·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내 유흥시설의 운영시간은 종전대로(제한없음) 유지 가능

1)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사적모임) 수도권 11명 이상, 수도권 외 지역 13명 이상 각각 금지

* 식당·카페 이용 시 접종 미완료자로만 모이는 경우, 최대 4명까지 가능

●(사적모임 외 모임·행사)

- (1~99명)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모임·행사 가능
- (100~499명) 참석인원 전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개최 가능
- (500명 이상) ①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②각종 스포츠 대회 및 ③(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

※ 실외체육시설에서 사적 모임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인원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총인원은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모임·행사(예시)>

결혼식, 장례식, 피로연,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등 각종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각종 (지역)축제,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 결혼식,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는 종전 거리두기 수칙과 택일 하여 적용 가능

- (시험)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붙임1: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이에, 각 기관 및 협회에서는 소속 회원사에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의료대응 여력을 초과하는 중증환자 내지 사망자의 지속 발생 예방을 위해 소속 직원(회원사) 등에 방역조치 사항을 상세히 안내·지도하여 주시고,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붙임1)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붙임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한국식품산업협회, 대한제과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카카오·초콜릿기술협회, 한국식품안전협회, 한국식품안전연구원, 식품안전상생협회, 한국인삼제품협회, 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 한국떡류식품가공업협회,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전북음식문화연구회, 한국베버리지마스터협회, 한국급식협회, 한국식자재유통협회, 집단급식조리협회, 한국커피과학회, 한국향미유통협회, 대한영양사협회, 푸드원텍(주), 한국농식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교육원, (주)한국식품정보원,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식회사 미래인증교육컨설팅, (주)세스코, (주)에프디엑스 안전관리인증교육원, (주)에프엠코리아스, 한국식품기술사협회, 해숲식품안전솔루션,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 한양대학교총장, 대구대학교총장, 전북대학교총장,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식품안전정보원장,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축산기업중앙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한국축산부산물업중앙회, 한국육계협회, 한국축산물처리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한국식육운송협회, 한국난가공협회, 대한아이스크림협회, 한국유가공협회,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한국수입육협회, 전국식육부산물전문상인회, 대한수의사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228개소),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수협중앙회장, 주류안전협회

주무관 최수진 사무관 출장 식품관리총괄 전결 2021. 10. 30.
과장 최종동

협조자

시행 식품관리총괄과-9024 (2021. 10. 30.)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관리총괄과 /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2060 팩스번호 043-719-2050 / lab98sj@korea.kr / 비공개(5)